

외국인 교원 임용규정

제정 2006. 05. 09

제4차 개정 2014. 07. 3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외국인 교원의 자격, 임용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외국인교원이라 함은 외국인(원어민)으로서 본 대학교의 어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외국인교원 임용대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
2.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교육 및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3.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자
4. 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제4조(임용절차) ① 외국인 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학과(부)에서 외국인 교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추천한 경우 특별초빙할 수 있다. (개정 2006.8.8, 2007.2.26)

② 공개채용의 경우 교원인사관리준칙 임용 절차를 준용하고, 특별초빙의 경우 교원 특별초빙 규정의 임용 절차를 준용한다. (개정 2006.8.8)

제5조(특별초빙 추천서류) 특별초빙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6.8.8)

1. 해당 학과(부) 추천서 및 교육활용계획서
2. 이력서, 학위 및 성적증명서, 경력증명서
3. 교육·학문상 업적 목록 및 연구실적물(학위논문 등)
4.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증명서
5. 신원증명서(소속국 대사관 발행)

제6조(임용조건 및 기간) ① 외국인 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 한다. (개정 2012.2.8)

②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강의평가,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임용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4.07.30)

③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 등 별도의 절차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교원신분이 상실된다.

제7조(처우 및 복무) ①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외국인교원의 학기당 책임시수는 주당 15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초과 강의수당을 지급한다. (개정 2007.2.26)

③ 외국인교원의 사택제공 등의 처우는 임용계약서상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④ 외국인교원의 복무는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관리준칙, 교원 특별초빙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452, 2006.5.9)

이 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725, 2006.8.8)

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92, 2007.2.26)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3월 1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84, 2012.2.8)

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27, 2014.07.30)

이 규정은 2014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